

정부조달  
부속서 17-가

제 1 절  
중앙정부기관

이 장은 조달가액이 정부조달협정 제2조와 제17.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금액과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것으로 산정되는 경우 이 절의 각 당사국 양허표에 기재된 중앙정부기관에 적용된다.

- 가. 상품 및 서비스의 조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양 당사국간 협의에 근거하여 조정된 금액으로서, 미합중국에 대하여는 미화 100,000불,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원화 1억원, 그리고
- 나. 건설서비스의 조달에 대하여, 정부조달협정(1994)에 따른 절차적 사안에 관한 결정(GPA/1)의 부속서 3, 국내 통화의 기준금액 통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각 당사국의 국내 통화로 환산되는 5,000,000 특별인출권 (원화 74억원 또는 미화 7,407,000불)

대한민국 양허표

- 1. 감사원
- 2. 국무총리실
- 3. 국무조정실
- 4. 여성가족부
- 5. 재정경제부
- 6. 기획예산처
- 7. 금융감독위원회
- 8. 통일부
- 9. 행정자치부
- 10. 중앙인사위원회
- 11. 과학기술부
- 12. 국정홍보처
- 13. 법제처

14. 국가보훈처
15. 외교통상부
16. 법무부
17. 국방부(주석2)
18. 교육인적자원부
19. 문화관광부
20. 문화재청
21. 농림부
22. 산업자원부
23. 보건복지부
24. 식품의약품안전청
25. 노동부
26. 건설교통부
27. 해양수산부
28. 정보통신부
29. 환경부
30. 조달청(주석3)
31. 국세청
32. 관세청
33. 통계청
34. 기상청
35. 경찰청(주석4)
36. 대검찰청
37. 병무청
38. 농촌진흥청
39. 산림청
40. 특허청
41. 중소기업청
42. 해양경찰청(주석4)
43. 소방방재청
44. 방위사업청(주석2)
45. 국가청소년위원회
46. 국가인권위원회

- 47. 방송위원회
- 48. 국가청렴위원회
- 49. 중소기업특별위원회
- 50. 공정거래위원회
- 51.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대한민국 양허표에 대한 주석

1. 위의 중앙정부기관은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보조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부속기관을 포함한다.

2.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 정부조달협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한민국 정부의 결정을 조건으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구매에 대하여, 이 장은 다음 군급번호 분류품목에 대하여만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이며, 제3절 및 제4절에 기재된 서비스 및 건설서비스에 대하여는 국가안보 및 국방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분야에 대하여만 적용될 것이다.

군급번호 2510	차량의 운전실, 몸체 및 프레임 구조 구성품
군급번호 2520	차량 동력전달 장치 구성품
군급번호 2540	차량용 가구 및 부수품
군급번호 2590	그 밖의 차량 구성품
군급번호 2610	항공기용이 아닌 공기식 타이어와 튜브
군급번호 291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 연료계통 구성품
군급번호 292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 전기계통 구성품
군급번호 293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 냉각계통 구성품
군급번호 294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 공기 및 기름 필터, 여과기 및 정화기
군급번호 2990	항공기용이 아닌 그 밖의 엔진 부수품
군급번호 3020	기어, 활차, 톱니바퀴 및 전달체인
군급번호 3416	선반
군급번호 3417	절삭기
군급번호 3510	세탁 및 드라이클리닝 장비
군급번호 4110	냉동장비

군급번호 4230	오염제거 및 주입장비
군급번호 4520	공간 난방장치 및 가정용 온수기
군급번호 4940	그 밖의 유지장비 및 수리점용 특수장비
군급번호 5120	날이 없고 전력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수공구
군급번호 5410	사전조립 및 이동식 건축물
군급번호 5530	합판 및 단판
군급번호 5660	울타리재료, 울타리 및 문
군급번호 5945	계전기 및 원통코일
군급번호 5965	헤드세트, 송수화기, 마이크로폰 및 스피커
군급번호 5985	안테나, 도파관 및 관련 장비
군급번호 5995	전선, 코드 및 전선조립품: 통신장비
군급번호 6220	차량용 전기조명 및 설비
군급번호 6505	약품 및 생물제제
군급번호 6840	살충소독제
군급번호 6850	각종 특수화학물
군급번호 7310	식품조리, 제빵 및 급식장비
군급번호 7320	주방설비 및 기구
군급번호 7330	주방용품 및 용구
군급번호 7350	식탁용 식기
군급번호 7360	음식조리 및 급식용 세트, 키트, 장비 및 모듈
군급번호 7530	문방구 및 기록용지
군급번호 7920	비, 솔, 걸레 및 스폰지
군급번호 7930	청소 및 광택용 화합물 및 조제품
군급번호 8110	드럼 및 깡통
군급번호 9150	기름 및 윤활유 : 절삭용, 윤활용 및 유압용
군급번호 9310	종이와 판지

3. 조달청 : 이 장은 이 절에 기재된 기관을 위하여 조달청에 의하여 수행되는 조달만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4.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 이 장은 정부조달협정 제23조에 규정된 대로,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의 조달은 적용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5. 이 장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축산법에 따른 농산물·수산물 및 축산물의 조달은 적용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 미합중국 양허표

1. 정부간관계자문위원회
2. 아프리카개발재단
3. 알래스카천연가스운송체제
4. 미합중국 전쟁기념물위원회
5. 애팔래치아 지역위원회
6. 방송경영이사회
7. 예술위원회
8. 인권위원회
9. 상품선물거래위원회
10. 소비재안전위원회
11. 국가사회봉사공사
12. 델라웨어강유역위원회
13. 농무부(주석2)
14. 상무부(주석3)
15. 국방부(주석4)
16. 교육부
17. 에너지부(주석5)
18. 보건·후생부
19. 국토안보부(주석6)
20. 주택·도시개발부
21. 개간국을 포함한 내무부
22. 법무부
23. 노동부
24. 국무부
25. 교통부(주석7)
26. 재무부
27. 보훈부
28. 환경보호국

29. 고용기회균등위원회
30. 대통령실
31. 미합중국 수출입은행
32. 농가신용처
33. 연방통신위원회
34. 연방곡물보험공사
35. 연방예금보험공사
36. 연방선거관리위원회
37. 연방주택담보대출회사
38. 연방주택금융이사회
39. 연방해사위원회
40. 연방중재·조정처
41. 연방광업안전·건강심사위원회
42. 연방교정시설노동산업공사
43. 연방준비제도
44. 연방연금투자저축이사회
45. 연방통상위원회
46. 총무처(주석8)
47. 정부저당공사
48. 홀로코스트추모위원회
49. 미주교류재단
50. 실적제보호이사회
51. 국립항공우주국
52. 국립문서·기록보관처
53. 국립수도권계획위원회
54. 국립문헌정보학위원회
55. 국립장애위원회
56. 국립신용조합감독처
57. 국립예술·인문학재단
58. 국립노동관계이사회
59. 국립중재이사회
60. 국립과학재단
61. 국립교통안전이사회

62. 원자력규제위원회
63. 직업안전·건강심사위원회
64. 정부윤리처
65. 핵폐기물협상대표실
66. 인사관리처
67. 특별조사처
68. 저축금융기관감독국
69. 해외민간투자공사
70. 평화봉사단
71. 역무원퇴직이사회
72. 증권거래위원회
73. 선발징병처
74. 소기업청
75. 스미스소니언협회
76. 사회보장처
77. 서스캐한나강유역위원회
78. 미합중국 국제개발처
79. 미합중국 국제무역위원회

### 미합중국 양허표에 대한 주석

1. 여기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이 장은 이 절에 기재된 기관의 모든 하부기관에 적용된다.

2. 농무부 : 이 장은 농업 지원 프로그램 또는 급식 프로그램을 증진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어떠한 농산물의 조달도 적용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3. 상무부 : 이 장은 국립해양대기관리국의 조선 활동과 관련된 어떠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조달도 적용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4. 국방부 :

가. 이 장은 다음에 기재된 군급번호 분류에 기술된 어떠한 상품의 조달도 적용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미 군급번호의 완전한 목록은

<http://www.fedbizopps.gov/classCodes1.html> 참조)

- 군급번호 19 함선, 소형선, 폰툰 및 부선거(해군 선박이나 선체 또는 이의 상부 구조의 주요 구성품으로 정의된 이 분류의 일부)
- 군급번호 20 함선 및 해상장비(해군 선박이나 선체 또는 이의 상부 구조의 주요 구성품으로 정의된 이 분류의 일부)
- 군급번호 2310 여객자동차(버스만)
- 군급번호 51 수공구
- 군급번호 52 측정공구
- 군급번호 83 직물류, 피혁류, 모피류, 의복 및 구두, 텐트 및 깃발류(핀, 바늘, 재봉도구, 깃대, 깃대도르래 이외의 모든 요소)
- 군급번호 84 피복, 개인장구 및 기장(하위 등급인 8460-수화물 이외의 모든 요소)
- 군급번호 89 식료품(하위 등급인 8975-담배상품 이외의 모든 요소)

나. 이 장은 특수 금속이나 하나 이상의 특수 금속을 포함한 어떠한 상품의 조달도 적용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특수 금속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 1) 최대 합금 함량이 다음 수준의 하나 이상을 초과하는 강철 : 망간 1.65 퍼센트, 실리콘 0.60 퍼센트, 또는 구리 0.60 퍼센트
- 2) 다음 중 어떠한 요소라도 0.25 퍼센트를 초과하여 포함하는 강철 : 알루미늄, 크롬, 코발트, 칼슘, 몰리브덴, 니켈, 티타늄, 텅스텐, 또는 바나듐
- 3) 니켈, 철-니켈, 또는 그 밖의 합금 금속(철 제외)을 총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포함한 코발트 주재료 합금으로 구성된 금속 합금
- 4) 티타늄 또는 티타늄 합금, 또는
- 5) 지르코늄 또는 지르코늄 주재료 합금

다. 이 장은 정부조달협정 제23조제1항의 적용으로 인하여 다음 군급번호 분류에 기재된 어떠한 상품의 조달도 일반적으로 적용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 군급번호 10 무기
- 군급번호 11 핵병기
- 군급번호 12 사격통제장비



군급번호 13	탄약 및 폭발물
군급번호 14	유도탄
군급번호 15	항공기 및 항공기 기체 구성품
군급번호 16	항공기 구성품 및 부수품
군급번호 17	항공기 발사, 착륙 및 지상취급용 장비
군급번호 18	우주비행체
군급번호 19	함선, 소형선, 폰툰, 부선거
군급번호 20	함선 및 해상장비
군급번호 2350	궤도식 전투, 공격 및 전술용 차량
군급번호 28	엔진, 터빈 및 구성품
군급번호 31	베어링
군급번호 58	통신, 탐지 및 방사능 간섭 장비
군급번호 59	전기 및 전자장비 구성품
군급번호 60	광섬유 재료, 구성품, 조립품 및 부수품
군급번호 8140	탄약 및 핵병기 상자, 포장 및 특수용기
군급번호 95	금속봉, 금속판 및 형재류

5. 에너지부 : 정부조달협정 제23조제1항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 장은 어떠한 다음의 조달도 적용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가. 에너지부가 원자력법의 권한에 따라 조달을 수행하는 경우, 핵 물질 또는 기술의 보호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상품 또는 서비스, 또는

나. 전략적 석유비축분과 관련된 석유 구매

6. 국토안보부 :

가. 이 장은 교통안전청에 의한 조달은 적용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나. 국방부에 적용가능한 필수안보 고려사항은 미합중국 연안 경비대에 동일하게 적용가능하다.

7. 교통부 : 이 장은 연방항공청에 의한 조달은 적용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8. 총무처 : 이 장은 다음 군급번호 분류 중 하나에 기술된 어떠한 상품의 조달도 적용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군급번호 51	수공구
군급번호 52	측정공구
군급번호 7340	식탁용 날붙이 및 접시류

## 제 2 절 상 품

이 장에서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이 장은 제1절에 기재된 기관에 의한 모든 상품의 조달에 적용된다.

## 제 3 절 서 비 스

이 장은 각 당사국의 정부조달협정 부록 I의 부속서 4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서비스의 조달에 적용된다.

## 제 4 절 건설서비스

이 장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이 장은 제1절에 기재된 기관에 의하여 조달되는 중앙상품분류체제 제51대분류 상의 모든 건설서비스의 조달에 적용된다.

## 제 5 절 일반 주석

여기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각 당사국 양허표의 다음 일반 주석은 이 부속서의 모든 절을 포함하여 이 장에 예외 없이 적용된다.

## 대한민국 양허표

1. 이 장은 급식 프로그램의 증진을 위한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그 법의 대통령령에 따른 수의계약과 중소기업에 위한 할당분, 또는
  -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위한 할당분

## 미합중국 양허표

1. 이 장은 소규모 또는 소수계 민족 소유 업체를 위한 어떠한 할당분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당분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타적 권리와 같은 어떠한 형태의 특혜나 가격 특혜도 포함할 수 있다.
2. 이 장은 이 부속서상에 명시적으로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 인 또는 정부 당국에 대한 정부의 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기관에 의하여 낙찰될 계약이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장은 그 계약을 구성하는 어떠한 상품 또는 서비스도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